1. 개정이유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이 적용되는「고용보험법」(법률 제17859호, ’21. 1. 5. 공포, ’21. 7. 1 시행) 개정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구직급여의 지급 결정,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무급휴직 및 무급휴직지원금 수급자가 휴직기간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시 피보험자격을 상실되거나 지원금이 잘못 지급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우선순위를 정비하며, 고용유지지원금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조치 등을 개선하고자 함. 또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326호)이 ’20. 5. 26. 공포, ’20. 8. 28 시행에 따라 정비된 법률용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우선순위(안 제14조제1항제1호 개정)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무급휴직 및 무급휴직지원금 수급자가 휴직기간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시 피보험자격을 상실되거나 지원금이 잘못지급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우선순위를 정함.

나. 자영업자 및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동시 해당시 피보험자격 취득방식 (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며,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을 유지 또는 취득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주의 매출액 등 비교시점 변경 근거규정 마련(안 제34조제2항 신설)

코로나19 등 고용위기 상황이 장기간(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매출액 등 비교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취업의 인정기준(안 제92조제3호 개정, 제92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근로자에게 구직급여 지급시 현재 당연가입 대상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인정 기준이 부재하여 관련 사항을 정함.

마.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조치 (안 제105조제3항 개정)

부정수급 횟수에 따른 추가징수액의 기준을 변경하여 추가징수액의 차이 해소하고, 즉시납부 대상을 명확히 함.

바.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휴가급여 보장(안 제121조의3 신설)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 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 제76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위임하고 있는 신청과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정함.

사.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안 제125

조의8, 제125조의9 신설)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노무제공자가 직접 그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에 따르도록 함.

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 결정 등(안 제125조의10 신설)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급자격증, 실업 인정의 신청 등은 근로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함.

자.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ㆍ지급(안 제125조의11, 제125조의12 신설)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는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 신청서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에 출산증명서,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지급 신청은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차. 법률용어 정비에 따른 용어 정비 등(안 제2조 개정 등)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326호)이 '20. 5. 26. 공포, '20. 8. 28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용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카.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1호 개정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 및 민원인의 신청 편의를 위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근로자ㆍ예술인 고용보험”을 “고용보험”으로 한다.

제10조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7호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6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1조 중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 제19호서식ㆍ별지 제19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을 “(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로 동시”를 “사람으로 동시”로, “자로 고용된”을 “사람으로 고용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월평균보수”를 “월평균보수(단, 영 제21조의 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직전 연도의 월평균보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근로자”를 “근로자,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을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가목과 나목의 피보험자격 가운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유지 또는 취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을 유지 또는 취득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38호서식까지”를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으로 한다.

제3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0퍼센트 이상으로 미달하여”를 “100분의 50 미만으로”로 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재난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준달의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

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달리 할 수 있다.

제68조제2항제1호 중 “없는 자”를 “없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대상이된”을 “대상이 된”으로 한다.

제87조제2항제1호 중 “자 중”을 “사람 중”으로 한다.

제90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의 경우에는”을 “사람의 경우에는”으로, “자의 증명서”를 “사람의 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의 경우에는”을 각각 “사람의 경우에는”으로,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의 증명서”를 “사람의 증명서”로 한다.

제92조제3호 중 “제공하는”을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제10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0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추가징수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부정수급액”을 “법 제62조에 따른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으로 한다.

제1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3(근로계약기간이 끝난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① 법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5호의3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23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한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의 지급 신청은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날부터 근로계약 종료일에 출산전후휴가 잔여일수를 더한

기간까지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의 지급 제한 범위에 관하여는 제123조의2, 제124조, 제1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으로본다.

제122조제1항 중 “제121조 또는 제121조의2”를 “제121조, 제121조의2 또는 121조의3에 따라”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법 제77조”를 “법 제76조의2, 제77조”로 한다.

제125조의2제1항 중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 제6호의4서식”으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취득”을 “피보험자격”으로 한다.

제125조의2제1항 중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 제6호의4서식”으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취득”을 “피보험자격”으로 한다.

제125조의3제1항제1호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5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6호의2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ㆍ예술인 고용보험”을 “고용보험”으로 한다.

제1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105호의3서식의 예술인”을 “별지 제105호의4서식의 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 한다.

제125조의6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2조제1항 및 법 제77조의4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제10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액”은 “출산전후급여등의 급여액”으로 본다.

④ 법 제77조의5제3항 및 영 제104조의9제5항에 따른 지급 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 과오급반환의 통지에 관해서는 제1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제5장의3(제125조의8부터 제125조의13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125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①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가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무제공자가 영 제104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의 월 보수액(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 보수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근로복지공단은 영 제104조의11제4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한 노무제공자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월 보수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① 영 제104조의12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2. 피보험자격의 상실의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② 영 제104조의12제2항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4조의12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에 따른다.

④ 법 제77조의10제1항 및 영 제104조의12제4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영 제10조제1항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영 제3조의2제2항·제4항 및 이 규칙 제2조제1항·제2항·제4항의 규정"은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항 제1

호 및 제2호 중 “일용근로자”는 각각 “단기노무제공자”로, 제10조 중 “제2조, 제2조의2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으로, “일용근로자”는 “단기노무제공자”로 본다.

제125조의10(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법 제77조의10제2항 및 영 제104조의13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 수급자격증, 실업인정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81조, 제82조, 제83조부터 제91조까지, 제92조의2, 제93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07조의2를 준용한다.

제125조의11(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 ① 법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는 별지 제105호의4서식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와 별지 제107호의3서식의 노무미제공 사실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출산의 경우에만, 제2호의 서류는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2.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3. 영 제104조의14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영 제104조의14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신청은 영 제104조의14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기간에 신청할 수 있고, 출산일 또는 유산·사산일부터 9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지급기간에 대하여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제125조의12(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25조의11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영 제104조의14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06호서식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②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방법, 급여원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1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제125조의13(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법 제77조의10제3항 및 영 제104조의15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에 대한 심사,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35조부터 제153조까지 및 제155조를 준용한다.

제148조제1항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재직한 자”를 “재직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호의2서식, 제3호서식,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 제6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의4서식(종전의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 및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부터 제24호서식까지, 제32호서식, 제34호서식, 제3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제75호서식, 제75호의2서식 및 제8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5호의3서식을 별지 제105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05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5호의4서식(종전의 별지 제105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6호서식, 제107호의3서식, 제108호서식, 제109호서식, 제110호서식, 제112호서식부터 제119서식까지, 제121호서식, 제123호서식, 제125호서식 및 제1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의8의제2항 및 제3항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외국인 고용보험 [ ] 가 입 / [ ] 가입탈퇴 신청서

※ 제2쪽의 작성방법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사업장관리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신청인 (외국인 근로자)	성명	영 문	
		한글표기	성 별 [ ] 남 [ ] 여
	외국인등록번호		국 적
	생년월일		체류자격

채용일	직종 부호	주 소정근로시간
일용근로자 여부 [ ] 예 [ ] 아니오		월평균보수(원) 원
해당연도 보수총액 (※ 가입탈퇴 시에만 작성) 원	전년도 보수총액 (※ 가입탈퇴 시에만 작성) 원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 ]가입, [ ]가입탈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외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사업장명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청인(외국인근로자)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외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처리	승인 여부	1. 승인 2. 불승인	외국인등록번호	
	미승인 사유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탈퇴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1. 신청인은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가입탈퇴 대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말합니다.
2. 직종 부호란에는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3.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란에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5. 월평균보수란에는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6. 해당연도 보수총액은 신청인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의 총액(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7. 전년도 보수총액은 신청인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직전연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의 총액(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적되, 직전연도의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유의사항

1. '21.1.1.부터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H-2, 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당연적용대상으로 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며, 실업급여사업을 별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나.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3년 1월 1일
2. 당연적용대상인 아닌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포함)는 취득신고 대상이 아니며,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실업급여사업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 모두 적용됩니다.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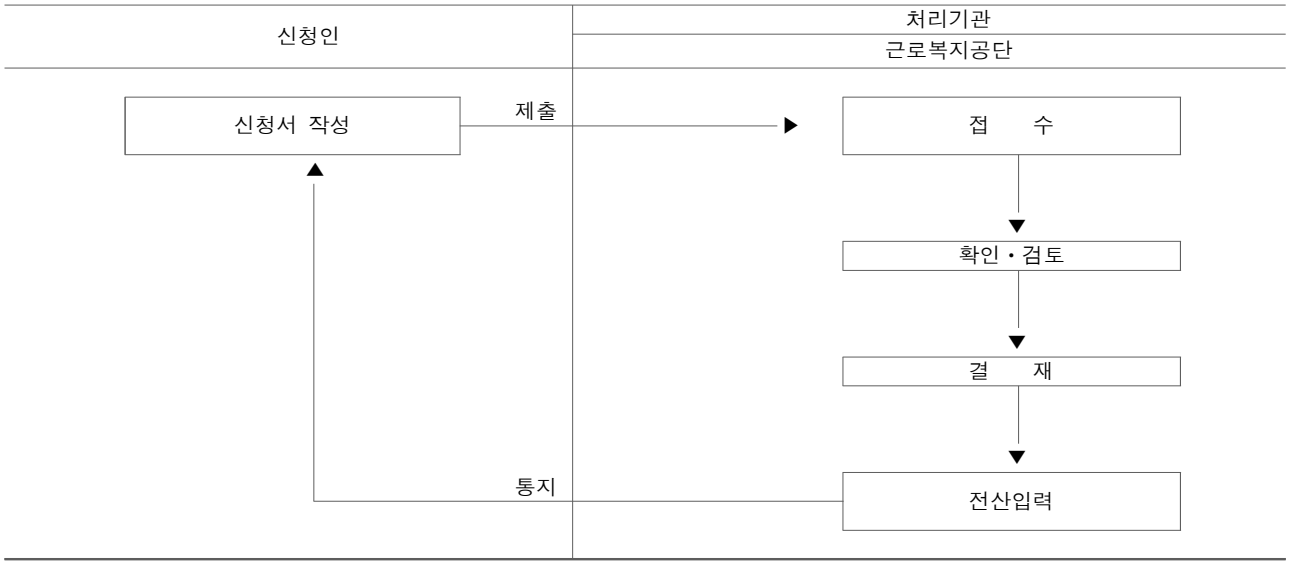

0.경영·사무·금융·보험직

01.관리직(임원·부서장)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02. 경영·행정·사무직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022 경영·인사 전문가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027 회계·경리 사무원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03. 금융·보험직

031 금융·보험 전문가
032 금융·보험 사무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135 정보보안 전문가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21. 교육직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212 학교 교사
213 유치원 교사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22. 법률직

221 법률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23. 사회복지·종교직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24. 경찰·소방·교도직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25. 군인

250 군인

3. 보건·의료직

30. 보건의료직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302 수의사
303 약사 및 한약사
304 간호사
305 영양사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307 보건·의료 종사자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41. 예술·디자인·방송직

411 작가·통번역가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415 디자이너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511 미용 서비스원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521 여행 서비스원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53. 음식 서비스직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2 식당 서비스원

54. 경호·경비직

541 경호·보안 종사자
542 경비원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61. 영업·판매직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613 텔레마케터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615 판매 종사자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62. 운전·운송직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622 자동차 운전원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7. 건설·채굴직

70. 건설·채굴직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8. 설치·정비·생산직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811 기계정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812 운송장비 정비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817 운송장비 조립원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824 용접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831 전기공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86. 섬유·의복생산직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86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7. 식품가공·생산직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설치·정비·생산직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89. 제조 단순직

890 제조 단순 종사자

9. 농림어업직

90. 농림어업직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2 낙농·사육 종사자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별지 제1호의2서식]<개정>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 ] 가 입 [ ] 가입탈퇴 신청서

※ 제1쪽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업장관리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신청인 (공무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직위(직급)	구분(1)	[ ] 별정직 [ ] 임기제
임용일	년 월 일	구분(2)	[ ] 국가 [ ] 지방

구분(3)	[ ] 입법부 [ ] 행정부 [ ] 사법부 [ ] 기타
직종 부호	주 소정근로시간
월 평균보수(원)	원
해당연도 보수총액 (※ 가입탈퇴 시에만 작성) 원	전년도 보수총액 (※ 가입탈퇴 시에만 작성) 원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3호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 ]가입, [ ]가입탈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공무원) (서명 또는 인)

소속기관	(전화번호 :)
소재지	
소속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청인(공무원)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1부(가입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공무원) (서명 또는 인)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처리	가입 여부	1. 가입 대상 2. 가입 비대상	
	미가입 사유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탈퇴일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1. 신청인은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가입탈퇴 대상인 공무원을 말합니다.
2. 직종 부호란에는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3.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란에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월평균보수란에는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5. 해당연도 보수총액은 신청인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의 총액(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전년도 보수총액은 신청인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직전연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의 총액(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적되, 직전연도의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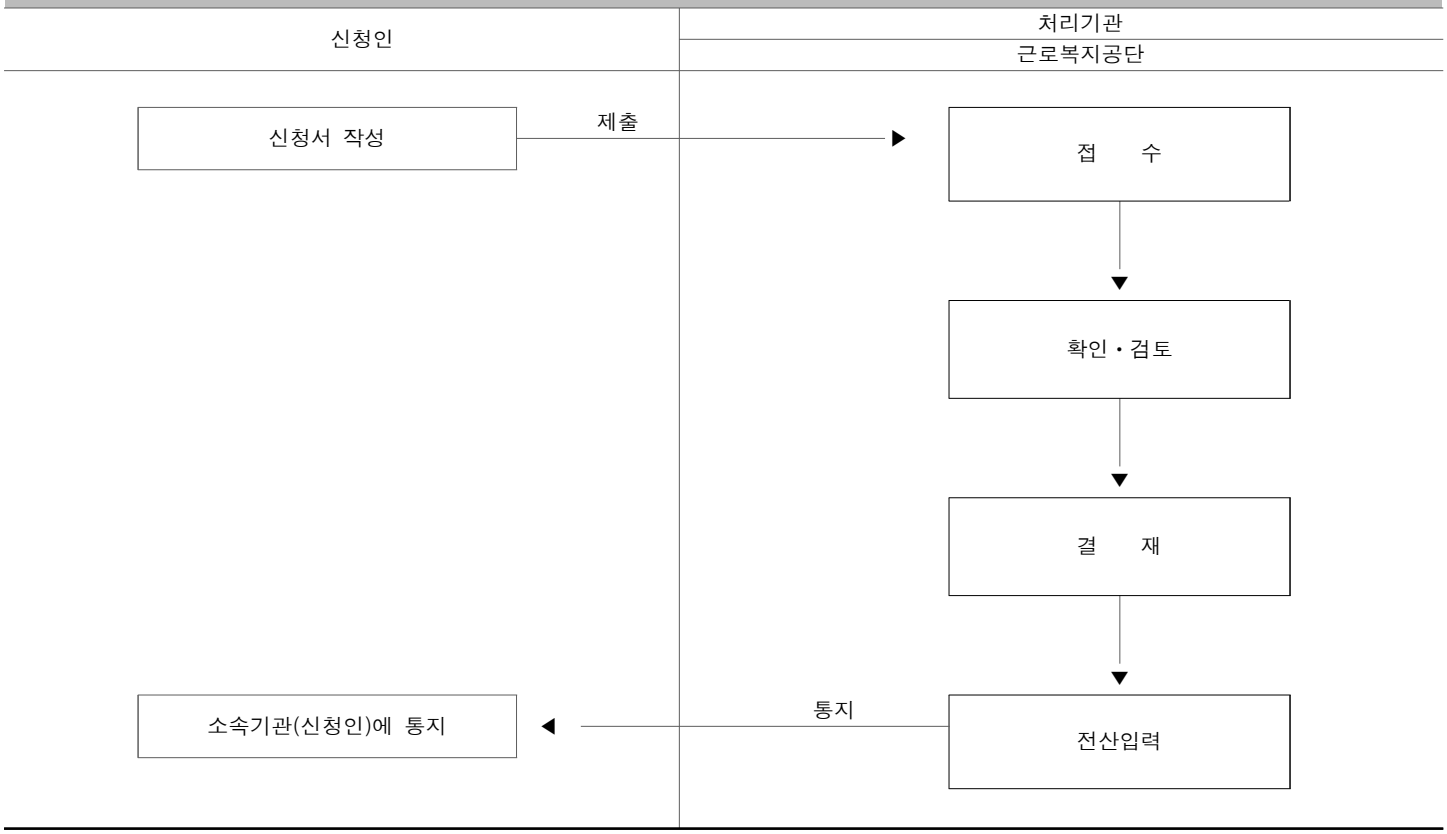

0.경영·사무·금융·보험직

01.관리직(임원·부서장)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02. 경영·행정·사무직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022 경영·인사 전문가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027 회계·경리 사무원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03. 금융·보험직

031 금융·보험 전문가
032 금융·보험 사무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135 정보보안 전문가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21. 교육직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212 학교 교사
213 유치원 교사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22. 법률직

221 법률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23. 사회복지·종교직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24. 경찰·소방·교도직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25. 군인

250 군인

3. 보건·의료직

30. 보건의료직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302 수의사
303 약사 및 한약사
304 간호사
305 영양사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307 보건·의료 종사자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41. 예술·디자인·방송직

411 작가·통번역가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415 디자이너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511 미용 서비스원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521 여행 서비스원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53. 음식 서비스직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2 식당 서비스원

54. 경호·경비직

541 경호·보안 종사자
542 경비원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61. 영업·판매직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613 텔레마케터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615 판매 종사자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62. 운전·운송직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622 자동차 운전원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7. 건설·채굴직

70. 건설·채굴직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8. 설치·정비·생산직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811 기계정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812 운송장비 정비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817 운송장비 조립원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824 용접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831 전기공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86. 섬유·의복생산직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86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7. 식품가공·생산직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설치·정비·생산직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89. 제조 단순직

890 제조 단순 종사자

9. 농림어업직

90. 농림어업직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2 낙농·사육 종사자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별지 제3호서식]<개정>

하수급인 명세서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5일

원수급인	사업주	①본사사업장관리번호		②상호 또는 법인명칭	
		③소재지	(전화번호:)(휴대전화:)		
		④대표자			
	사업장	⑤사업장(현장)관리번호			
		⑥명칭(공사명)		⑦보험사무대행기관	
		⑧소재지	(전화번호:)(휴대전화:)		
하수급인 (1)	사업주	⑨사업장관리번호			
		⑩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⑪소재지	(전화번호:)(휴대전화:)		
		⑫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⑬건설·공사·소방시설·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등록증 종류	등록번호	등록일자
		⑭하도급금액			
하수급인 (2)	사업주	⑨사업장관리번호			
		⑩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⑪소재지	(전화번호:)(휴대전화:)		
		⑫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⑬건설·공사·소방시설·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등록증 종류	등록번호	등록일자
		⑭하도급금액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제출서류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등록증(건설·공사·소방시설·문화재수리업)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건설업 등 관련 사업의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하여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서식입니다.
2. 건설업 등 관련 사업의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를 말합니다.

작성방법

1. ① ~ ⑧란은 원수급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⑨ ~ ⑭란은 하수급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①란은 원수급인 본사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4. ⑤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5. ⑥란은 해당 사업장의 명칭(공사명)을 적습니다.
6. ⑦란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7. ⑧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⑨란은 하수급인 본사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9. ⑩란은 하수급인의 사업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0. ⑪란은 하수급인의 사업(본사) 소재지를 적습니다.
11. ⑬란은 하수급인의 등록증 관련 정보를 적습니다. 건설업, 주택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문화재수리업등 중에서 하수급인에게 해당되는 등록증의 종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적습니다.
12. ⑭란은 해당 하수급인과 계약한 하도급 공사금액을 적습니다.
13. 여러 명의 하수급인을 신고할 경우 ⑨ ~ ⑭란의 사항을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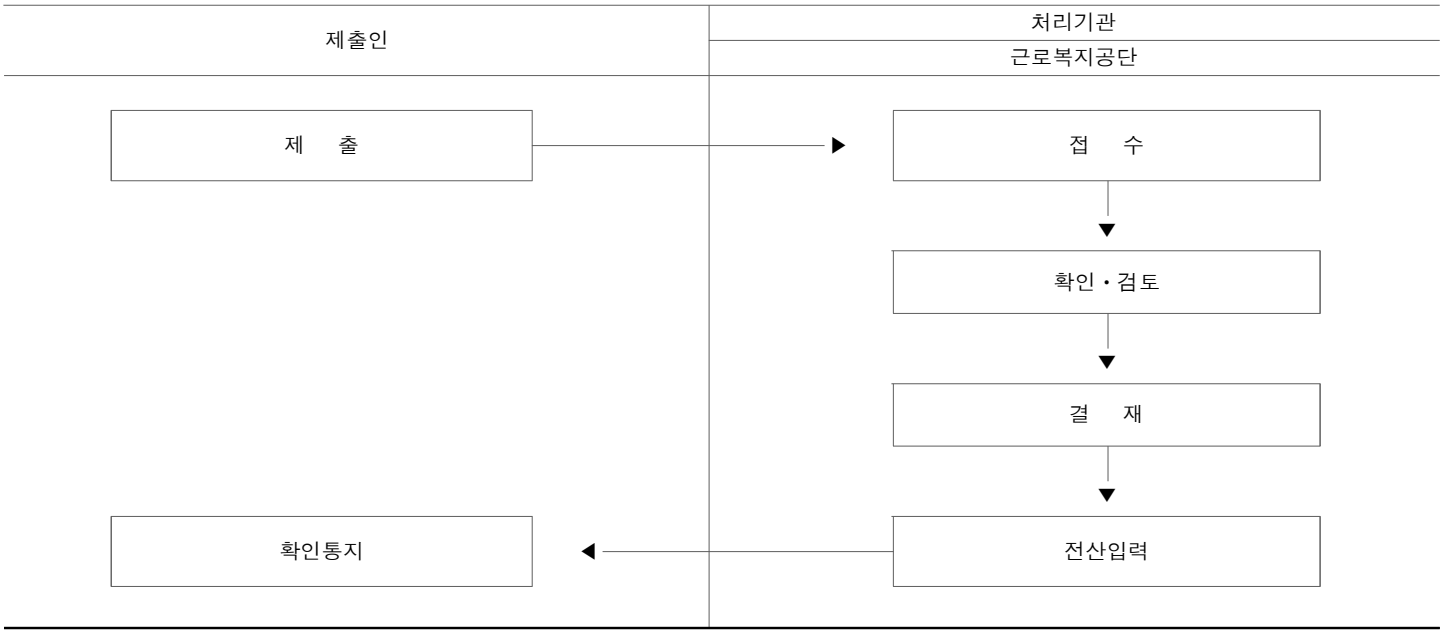

[별지 제5호서식]<개정>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 제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 각각의 자격취득일 또는 월 소득액(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산재보험은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구분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국적 / 체류자격	대표자 여부	월 소득액(소득월액·보수월액·월평균보수액)(원)	자격취득일(YYYY.MM.DD)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자격취득부호	특수직종부호	직역연금부호	자격취득부호	보험료 감면부호	공무원·교직원 회계명/부호	공무원·교직원 직종명/부호	직종부호	1주 소정근로시간	계약종료연월(계약직만 작성)	보험료 부과구분(해당자만 작성) 부호	보험료 부과구분(해당자만 작성) 사유	
1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예 [ ]아니오
2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예 [ ]아니오
3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예 [ ]아니오
4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예 [ ]아니오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 서류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적은 서류	

유의사항	
건강보험	1.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 산재보험	1. 임의가입대상인 외국인 및 공무원은 "외국인(공무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1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1.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에 관하여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때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적은 내역)을 적습니다.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 산재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별도 서식 신고) 2. "월평균 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이후 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종사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적음). - 근로자의 보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3. "1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1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종사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 종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보험료 부과부호는 해당자만 적습니다(사유란에는 대상 종사자 부호를 적습니다).

자격취득 부호 등

국민연금

[자격취득 부호] 01. 18세 이상 당연취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나목 및 제4호 가목, 나목, 다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03. 18세 미만 취득 0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건강보험

[자격취득 부호]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 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벽지(사업장) 42. 섬·벽지(거주지) 81. 휴직

고용보험·산재보험

[직종 부호] 제4쪽의 별지[1.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부호	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부호	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51	O	O	x	x	09.고용보험미가입.외국인근로자 10.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07.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52	O	x	x	x	03.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56	x	x	O	x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4	O	x	O	O	22.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58	O	x	x	O	21.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60	O	O	x	O	27.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당연적용대상)

0.경영·사무·금융·보험직

01.관리직(임원·부서장)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02. 경영·행정·사무직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022 경영·인사 전문가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027 회계·경리 사무원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03. 금융·보험직

031 금융·보험 전문가
032 금융·보험 사무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135 정보보안 전문가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21. 교육직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212 학교 교사
213 유치원 교사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22. 법률직

221 법률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23. 사회복지·종교직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24. 경찰·소방·교도직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25. 군인

250 군인

3. 보건·의료직

30. 보건의료직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302 수의사
303 약사 및 한약사
304 간호사
305 영양사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307 보건·의료 종사자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41. 예술·디자인·방송직

411 작가·통번역가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415 디자이너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511 미용 서비스원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521 여행 서비스원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53. 음식 서비스직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2 식당 서비스원

54. 경호·경비직

541 경호·보안 종사자
542 경비원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61. 영업·판매직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613 텔레마케터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615 판매 종사자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62. 운전·운송직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622 자동차 운전원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7. 건설·채굴직

70. 건설·채굴직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8. 설치·정비·생산직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811 기계정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812 운송장비 정비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817 운송장비 조립원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824 용접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831 전기공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86. 섬유·의복생산직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86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7. 식품가공·생산직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설치·정비·생산직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89. 제조 단순직

890 제조 단순 종사자

9. 농림어업직

90. 농림어업직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2 낙농·사육 종사자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제5쪽)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보훈보상대상자			외국인	
				종별 부호	등록일 (YYYY.MM.DD)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피부양자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없음

유의사항

※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에서 가능합니다.

작성방법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적어야 합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에는 종별 부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종별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적은 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표시를 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의2서식]<신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산재보험 입직신고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제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1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정부·공공발주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해당함	

공통							고용보험			산재보험 (해당 직종자에 한하여 아래 표*를 참조하여 번호 기재)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자격취득일 /입직일	직종 부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국적	체류 자격	월(평균)보수			
1										방문판매원	입직유형	
										택배/퀵기사	배송수단	
										화물차주		
2										방문판매원	입직유형	
										택배/퀵기사	배송수단	
										화물차주		
3										방문판매원	입직유형	
										택배/퀵기사	배송수단	
										화물차주		

*직종별 추가입력번호			
	방문판매원	입직유형	① 월 기준 소득 • 일수 이상 ② 사업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정 신고
	택배기사 및 퀵서비스기사	배송수단	① 화물자동차 ② 승용·승합자동차 ③ 이륜자동차 ④ 도보·자전거·지하철 ⑤기타
	화물차주		① 일반형 화물자동차(5톤 미만) ② 일반형 화물자동차(5톤 이상) ③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피견인형 제외) ④ 견인형 화물자동차(피견인형 포함)

위와 같이 자격취득·입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제1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공통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자격취득일/입직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노무제공 개시일을 적습니다. 3. 직종부호란에는 아래 직종현황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고용보험	1.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인 가입자(노무제공자, 예술인)의 취득 여부에 대하여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에 적은 내역)을 적습니다. 3. 월(평균)보수액란에는 예술인의 경우 “월평균보수액”(노무제공 개시 이후 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종사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노무제공자의 경우 “월보수액”(노무제공월에 실제 지급된 보수액 또는 노무제공개시 이후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액)을 적습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산재보험	1. 방문판매원 입직 유형 란은 직종이 “방문판매원”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2. 배송수단 란은 직종이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화물차주”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직종부호

	[창작]	[실연]	[기술지원]
예술인	441 (창작)문학 442 (창작)미술 443 (창작)사진 444 (창작)건축 445 (창작)음악 446 (창작)국악 447 (창작)무용 448 (창작)연극 449 (창작)영화 450 (창작)연예 451 (창작)만화 452 (창작)기타	461 (실연)문학 462 (실연)미술 463 (실연)사진 464 (실연)건축 465 (실연)음악 466 (실연)국악 467 (실연)무용 468 (실연)연극 469 (실연)영화 470 (실연)연예 471 (실연)만화 472 (실연)기타	481 (기술지원)문학 482 (기술지원)미술 483 (기술지원)사진 484 (기술지원)건축 485 (기술지원)음악 486 (기술지원)국악 487 (기술지원)무용 488 (기술지원)연극 489 (기술지원)영화 490 (기술지원)연예 491 (기술지원)만화 492 (기술지원)기타
노무제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41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소속) 942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외 소속) 943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강사 944 택배기사 945 대출모집인(여신금융기관 소속) 946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소속) 947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48 방문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949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50 가전제품배송기사 951 방과후강사 952 건설기계조종사 953 화물차주(시멘트 운송) 954 화물차주(철강재 운송)	955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 956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957 퀵서비스기사 958 대리운전기사 959 골프장캐디 960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처리결과 통지	➔	수 령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개정>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 연월일이 다른 경우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산재보험은 7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실 연월일 (YYYY.MM.DD)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상실부호	초일취득·당월상실자 납부여부	상실부호	연간 보수 총액				상 실 사 유		해당 연도 보수 총액	전년도 보수 총액
								해당 연도		전년도		구체적 사유	구분코드	고용보험	고용보험
								보수 총액	근무 개월수	보수 총액	근무 개월수			산재보험	산재보험
						희망 [ ]									
						희망 [ ]									
						희망 [ ]									
						희망 [ ]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국민연금	사용자는 소재 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1.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3. 연도중 요율 변경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자활근로종사자 또는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의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을 위하여 공단이 정하는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자가 다른 경우 상실 연월일란에 모두 함께 적되, 해당 칸 안에서 줄을 달리하고 괄호로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예) 201x.xx.xx (고용보험)
201x.xx.xx (건강보험)

작성방법

공통사항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상실 연월일	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2. 국민연금의 경우 중 자격 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 부호가 6·15·16·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습니다. 3. 건강보험의 경우 중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을 적습니다. (예)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국민연금	**<상실 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 상실(국외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폐합) 15.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6.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 무보수 대표이사 22. 근로자 제외 1. 상실 부호 22. 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때에는 "초일 취득·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의 희망"[ ]"에 "√"표시를 합니다.
건강보험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당연적용 제외 등)<13> 1. "해당 연도"란의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 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 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⑱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⑱-1야간근로수당과 ⑳비과세소득 계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2. "근무개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란도 작성함)의 연간 보수 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이직) 사유코드> ※ 상실(이직) 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계약해지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해당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간 보수(「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의 총액을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전보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수총액을 달리하여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	수 령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별지 제6호의2서식]<신설>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예술인 [ ]노무제공자)
[ ] 산재보험 이직신고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제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1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정부·공공발주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해당함	

공통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자격상실일	직종 부호	휴대전화번호	상실/이직사유	상실코드	해당연도 보수총액	전년도 보수총액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만 작성
1										[ ]전속성 없음
2										[ ]전속성 없음
3										[ ]전속성 없음
4										[ ]전속성 없음
5										[ ]전속성 없음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 제1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노무제공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작성방법

공통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자격상실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일 또는 노무제공 종료일, 사망일 등)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 (예시) 노무제공 종료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고용보험	1. “상실사유”란에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습니다. 【상실(이직)사유 코드】 ◈ 자진이직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이직, 12. 사업장 이전, 노무제공조건 변동, 보수 체불, 계약 변동 등으로 자진이직 ◈ 사업장 사정과 피보험자(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이직(계약해지 포함) 26. 피보험자(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2. 계약기간 만료, 사업(공사) 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2. “해당연도 보수총액”란에는 이직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간보수의 총액을 적되, "전년도 보수총액"란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산재보험	1. “상실/이직사유”란에는 노무제공 종료 사유(계약기간 만료, 개인사정, 기타 그 밖의 사정 등)의 세부 내용을 기재합니다. 2. 전속성이 없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의 경우 “[ ]전속성 없음”에 “√” 표시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	수 령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별지 제6호의3서식]<신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청서

※ 하단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보험사무 대행기관	명칭	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종부호	전화번호	취득일	상실일	상실사유 (코드)	해당연도 보수총액	전년도 보수총액
1							43		
2							43		
3							43		
4							43		
5							4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대표자 또는 노무제공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본 신청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월보수가 8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자 할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자격상실일"은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이 된 달의 초일로 적습니다.
   ※ (예시) 8월의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8월 1일(이 경우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달의 다음달 15일인 9월 15일까지 제출하는 신청서에 대하여만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
3. 상실사유코드는 : 4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의 상실신청
4. "해당연도 보수총액" 란에는 상실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속 사업장에서의 취득일부터(취득일이 해당연도 전인 경우에는 연도 초일부터) 이직일까지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적고, "전년도 보수총액" 란에는 취득일이 해당연도 전으로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처리절차

피보험자격 상실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결정 통지	➔	수 령
신청인 (사업주, 노무제공자)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청인 (사업주, 노무제공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호의4서식]<개정>

[ ]예술인 [ ]노무제공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사업장 명칭	사업장 전화번호	노무제공 개시일	(예술인)계약 총소득 (노무제공자)월보수액
	사업장 소재지	사업주 성명	노무제공 종료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3항·제104조의11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2제1항·제125조의8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소득합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유의사항

1. 위 신청서는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과 사업주가 체결한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을 나누어 월(月) 단위로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이 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예술인 또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의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이 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노무제공자의 경우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고용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보수에 따라 결정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인" 항목에는 신청인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장" 항목에는 예술인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노무제공기간(시작 연 월 일 ~ 종료 연 월 일), 소재지, 사업주 성명, 계약 총소득을 적고,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노무제공기간(시작 연 월 일 ~ 종료 연 월 일), 소재지, 사업주 성명, 월보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피보험자격 취득 소득합산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사업장 안내 및 사실조사	→	결정 통지	→	수 령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청인 사업장 사용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7호서식]<개정>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일용근로자용)(년 월분)

※ 제2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통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갈음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하수급인관리번호 (건설공사등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공사명(유기사업명)	
	소재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FAX번호	
	고용관리 책임자 (※건설업만 해당)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직무내용) (근무지)[ ]본사 [ ]해당 사업장(현장) [ ]다른 사업장(현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국적 / 체류자격				
전화번호(휴대전화)				
직종 부호				
근로일수 ("o"표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31	31	31	31
근로일수 / 일평균 근로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보수지급기초일수	일	일	일	일
보수총액	원	원	원	원
임금총액	원	원	원	원
이직사유 코드				

보험료부과구분(해당자만)

부호	사유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	지급월	월	월	월	월
	총지급액 (과세소득)	원	원	원	원
	비과세소득	원	원	원	원
	원천징수액 소득세	원	원	원	원
	원천징수액 지방소득세	원	원	원	원
일자리안정자금지원신청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출(첨부)서류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적은 서류(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1. 이 서식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입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하고,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세소득)"과 "임금총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모두 적습니다.
4.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제1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신고 관련>

1.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주가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을 작성·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4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으로 직접 신고를 원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적지 않으며,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적지 않거나 잘못 적은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부실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일용근로소득 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관련>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직위"는 고용관리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직위(예시: 부장, 팀장, 과장, 사원 등)를 작성하고, "근무지"는 고용관리책임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중 해당하는 칸에 체크하며, "직무내용"은 고용관리책임자의 임무 이외에 겸직하고 있는 직무내용에 해당하는 다음의 코드번호를 적습니다(직무내용이 여러개인 경우 모두 적을 수 있습니다).
   01. 인사·노무 02. 회계·세무·경리 03. 경영·관리 04. 홍보·영업 05. 기술·기능 06. 기 타
2.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3. "직종부호"는 ◈ 별지 [1.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보수지급기초일수는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고(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 보수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가 됩니다.
   * '보수'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수를 말합니다
5.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며,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6.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으로써,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7. "이직 사유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공사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8. "보험료부과구분"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 해당자만 적습니다)

부호	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51	O	O	x	x	09.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근로자 11. 항운노조원(임금채권 부담금 부과대상)
52	O	x	x	x	03. 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생) 13.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55	x	x	O	O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07. 해외파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56	x	x	O	x	16. 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9. "지급월"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을 적습니다.
10. "총지급액(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1.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2.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금액)]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3. 원천징수액란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0.경영·사무·금융·보험직

01.관리직(임원·부서장)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02. 경영·행정·사무직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022 경영·인사 전문가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027 회계·경리 사무원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03. 금융·보험직

031 금융·보험 전문가
032 금융·보험 사무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135 정보보안 전문가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21. 교육직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212 학교 교사
213 유치원 교사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22. 법률직

221 법률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23. 사회복지·종교직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24. 경찰·소방·교도직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25. 군인

250 군인

3. 보건·의료직

30. 보건의료직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302 수의사
303 약사 및 한약사
304 간호사
305 영양사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307 보건·의료 종사자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41. 예술·디자인·방송직

411 작가·통번역가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415 디자이너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511 미용 서비스원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521 여행 서비스원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53. 음식 서비스직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2 식당 서비스원

54. 경호·경비직

541 경호·보안 종사자
542 경비원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61. 영업·판매직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613 텔레마케터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615 판매 종사자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62. 운전·운송직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622 자동차 운전원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7. 건설·채굴직

70. 건설·채굴직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8. 설치·정비·생산직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811 기계정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812 운송장비 정비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817 운송장비 조립원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824 용접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831 전기공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86. 섬유·의복생산직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86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7. 식품가공·생산직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설치·정비·생산직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89. 제조 단순직

890 제조 단순 종사자

9. 농림어업직

90. 농림어업직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2 낙농·사육 종사자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별지 제7호의2서식]<신설>

[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단기 예술인 / [ ]단기 노무제공자) (년 월분)
[ ]산재보험 입·이직신고서(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제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통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정부·공공발주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해당함)	
		유기사업명	
	소재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FAX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
국적 / 체류자격				
전화번호(휴대전화)				
직종 부호				
건설기계번호				
노무제공일수 ("o"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일	일	일	일
보수총액	원	원	원	원
이직사유 코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2항 및 제104조의1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제2항, 제125조의9제2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6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단기예술인(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노무제공자 중 노무제공계약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의 고용보험 및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를 위한 서식입니다.
2. 제1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3. 공통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작성방법

1.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한 문화예술용역관련 사업의 발주자 또는 원수급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2. "직종부호"는 단기예술인의 경우 [예술인 직종부호]를,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부호]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3. “건설기계 번호”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에만 아래 ‘건설기계 번호’를 참조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번호를 적습니다.
4.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며,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 ‘보수’란 단기예술인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액,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수액을 말합니다.
5. "이직 사유코드":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계약기간 만료 등)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부상, 출산 등)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직종부호

	[창작]		[실연]		[기술지원]	
예술인	441(창작)문학	442(창작)미술	461(실연)문학	462(실연)미술	481(기술지원)문학	482(기술지원)미술
	443(창작)사진	444(창작)건축	463(실연)사진	464(실연)건축	483(기술지원)사진	484(기술지원)건축
	445(창작)음악	446(창작)국악	465(실연)음악	466(실연)국악	485(기술지원)음악	486(기술지원)국악
	447(창작)무용	448(창작)연극	467(실연)무용	468(실연)연극	487(기술지원)무용	488(기술지원)연극
	449(창작)영화	450(창작)연예	469(실연)영화	470(실연)연예	489(기술지원)영화	490(기술지원)연예
	451(창작)만화	452(창작)기타	471(실연)만화	472(실연)기타	491(기술지원)만화	492(기술지원)기타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941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소속)		948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955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	
	942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외 소속)		949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56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운송)	
	943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강사		950 가전제품배송기사		957 퀵서비스기사	
	944 택배기사		951 방과후강사		958 대리운전기사	
	945 대출모집인(여신금융기관 소속)		952 건설기계조종사		959 골프장캐디	
	946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소속)		953 화물차주(시멘트 운송)		960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947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54 화물차주(철강재 운송)			

건설기계 번호

※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아래 명시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번호	건설기계명	번호	건설기계명	번호	건설기계명	번호	건설기계명
1	불도저	8	모터그레이더	15	아스팔트믹싱플랜트	22	항타 및 항발기
2	굴삭기	9	롤러	16	아스팔트피니셔	23	자갈채취기
3	로더	10	노상안정기	17	아스팔트살포기	24	준설선
4	지게차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8	골재살포기	25	특수건설기계
5	스크레이퍼	12	콘크리트피니셔	19	쇄석기	26	타워크레인
6	덤프트럭	13	콘크리트살포기	20	공기압축기	27	콘크리트믹서트럭
7	기중기	14	콘크리트 펌프	21	천공기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처리결과 통지	➔	수 령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0호서식]<개정>

[ ]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4일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전화번호:)		

사 업 장	④사업장관리번호 또는 하수급인관리번호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함)	⑤명 칭
	⑥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⑦대표자	

⑧신고사항	1. 자격취득 2. 자격상실 3. 근로내용·노무제공내용 확인(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만 해당함)
⑨신고사유	

⑩ 근로내용 (일용근로자) · 노무제공내용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																
월																
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4조의6제3항·제104조의12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및 제125조의3제3항·제125조의9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관련 계약서 등 노무제공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

1. ① ~ ③란은 신고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④ ~ ⑦란은 사업장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④란은 해당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나 하수급인관리번호를 적습니다(관리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함).
4. ⑤・⑥・⑦란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및 전화번호, 대표자를 정확히 적으시기 바랍니다.
5. ⑧란은 해당 신고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6. ⑨란은 구체적인 신고사유 및 고용 또는 노무제공 관련 사실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적습니다(예: 신고목적, 입・퇴사일, 담당업무, 퇴사사유, 월임금(월보수) 등). 특히 일용근로자["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묵시적 계약 체결 포함)"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와 단기예술인["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을 말합니다], 단기노무제공자["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노무제공자"를 말합니다]는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한 기간 동안의 근로·노무제공일수, 일평균근로・노무제공 시간, 지급받은 임금(보수)총액을 반드시 적습니다.
7. ⑩란은 근로・노무제공일자를 적되, 적는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8. 제출서류는 신고사유에 적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사업주가 확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9호서식) 등]를 말하며 그 적은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명 자료가 불분명하여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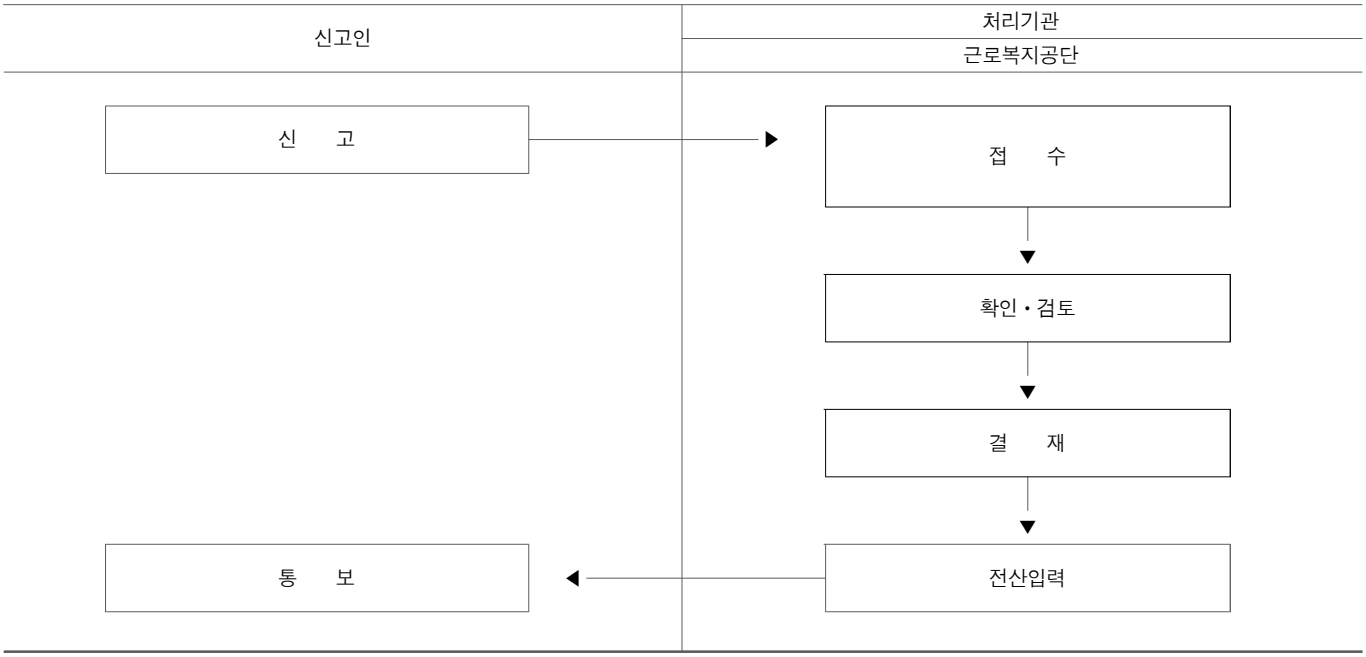

[별지 제11호서식]<개정>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

우체국
요금후납

반송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재중

수신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 취득 [ ] 상실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사업장관리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사업장명칭	신고일자

일련번호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여부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성명	생년월일			

본 통지서에 적혀 있지 않은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명세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근로자·예술인 고용정보현황조회 목록을 조회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제77조의5제1항·제77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5조의3제4항·제125조의9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문서번호			

178㎜×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2호서식]<개정>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우체국
요금후납

근로복지공단

반송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재중

수신자:

년 월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사업장관리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사업장명칭	신고일

일련번호	피보험자		근로·노무제공 연월	근로·노무제공 일수	임금(보수)총액
	성명	생년월일			

본 통지서에 적지 않은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명세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oomwel.or.kr)에서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고용정보 목록을 조회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제77조의5제1항·제77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5조의3제4항·제125조의9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문서번호			

178㎜×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3호서식]<개정>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

우체국
요금후납

반송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재중

■ 귀하는 입사/퇴직 등으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상실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수신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 취득 [ ]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피보험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격취득 (고용)	자격취득일	상실사유	
	취득신고일 (가입신청일)		
자격상실 (이직)	상실연월일		
	상실신고일 (탈퇴신청일)		

사업장관리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사업장명칭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시면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보다 정확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제77조의5제1항·제77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5조의3제4항·제125조의9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구직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48조 및 제77조의3).

-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 예술인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고,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유지하는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유지하는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 재취업 지원을 위한 각종 고용정책정보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문의 전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문서번호			

178㎜×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4호서식]<개정>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우체국 요금후납

근로복지공단

반송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재중

■ 귀하의 일용근로내역이 다음과 같이 신고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자 :

년 월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피보험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로·노무제공내용	사업장관리번호(하수급인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 연락처	현장명	근로·노무제공 연월	근로·노무제공 일수	임금(보수)총액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시면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보다 정확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제77조의5제1항·제77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5조의3제4항·제125조의9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구직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내에「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48조,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했으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건설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포함)이어야 하는 등의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 단기예술인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고,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유지했으며,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용이 없어야 하는 등의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유지했으며,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용이 없어야 하는 등의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 재취업 지원을 위한 각종 고용정책정보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문의 전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문서번호			

178㎜×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9호서식]<개정>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일련 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변경내용			
			변경일	부호	변경 전	변경 후

[내용변경부호]: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국민연금만 해당) 4. 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5.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생계급여 수급자 ⇔ 급여특례・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고용보험만 해당) 6. 휴직 종료일(고용・산재보험만 해당) 7. 자격상실일자(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을 변경할 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별도 해당 기관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증 수령지	[ ] 사업장 주소지	[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 근무처 또는 근무내역이 변경될 경우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 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근무처가 변경될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5 서식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신고서 ·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 변경 확인 통지	➔	수령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별지 제19호의2서식]<신설>

[ ]고용보험 ([ ]예술인 / [ ]노무제공자)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내용변경 신고서

(앞쪽)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일련 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변경내용			
			변경일	부호	변경 전	변경 후

[내용변경부호]: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7. 휴업 등 종료일 11. 주소 12. 휴대전화번호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 변경 확인 통지	➔	수령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별지 제20호서식]<개정>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4일

청구인	①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④입사일 또는 노무제공 개시일	⑤퇴직일 또는 노무제공 종료일	
사업장	⑥사업장관리번호 또는 하수급인관리번호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합니다)		
	⑦명 칭		
	⑧소재지 (전화번호:)		
	⑨대표자	⑩업 종	

⑪확인청구내용	1. 자격취득 2. 자격상실 3. 근로내용·노무제공내용 확인(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만 해당합니다)
⑫청구사유	1. 자격취득·상실신고 누락 2. 피보험기간 정정 3. 신고사항 변경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04조의7·제104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25조의3제4항·제125조의9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관련 계약서 등 노무제공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178㎜×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 ~ ⑤란은 청구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⑥ ~ ⑩란은 사업장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⑪・⑫란은 확인청구의 내용 및 청구취지 등에 대하여 적습니다.
4. ④란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된 일자(입사일) 또는 노무제공을 개시한 날(노무제공 개시일)을 적습니다.
5. ⑤란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일자(퇴직일) 또는 노무제공을 종료한 날(노무제공 종료일)을 적습니다.
6. ⑥란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나 하수급인관리번호를 적습니다(관리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⑪란은 확인청구 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8. ⑫란은 확인청구사유가 사업주의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누락에 따른 것이면 1번란에 ○표 하고, 피보험자격 신고는 되어 있으나 피보험기간의 정정을 위한 경우에는 2번란에 ○표 하며, 피보험자격 신고사항 변경을 위한 경우에는 3번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는 확인청구사항에 적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를 말하며 그 적은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명자료가 불분명하여 청구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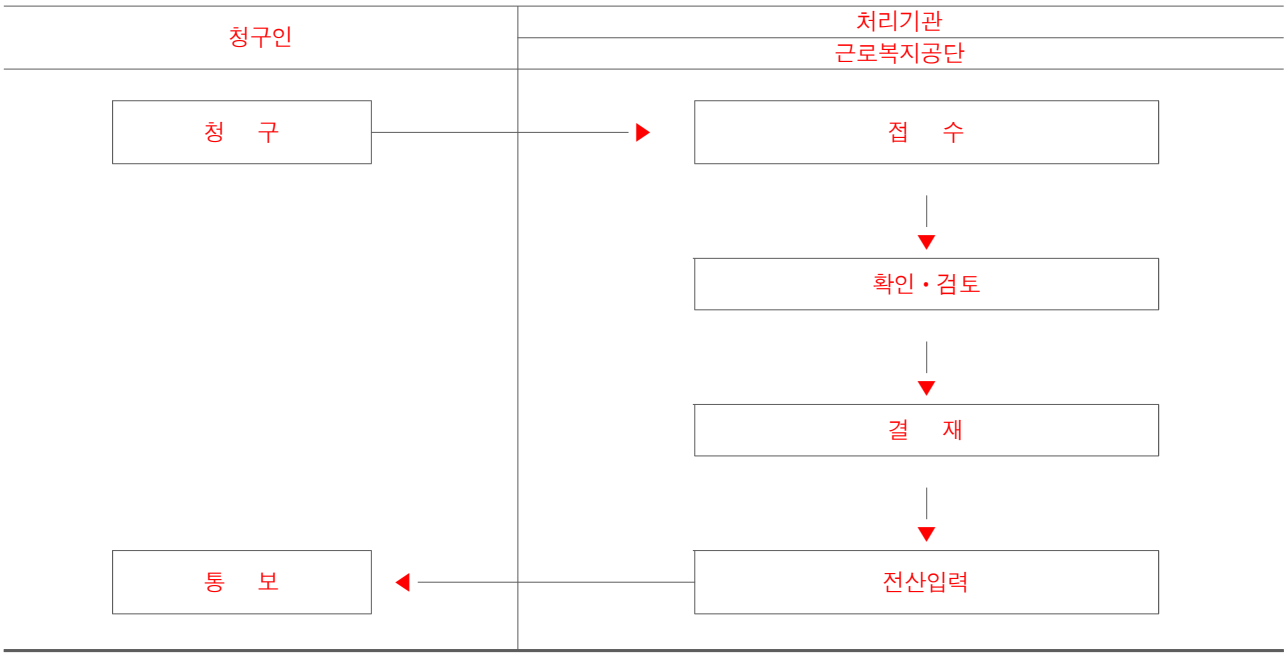

[별지 제21호서식]<개정>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우체국
요금후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 재중

수신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취득 [ ]상실 확인통지서(사업주용)

① 사업장관리번호(하수급인관리번호)					
② 사무조합번호				③ 사무조합명	
④ 사업장명칭					
일련번호	피보험자		⑦ 자격취득 · 상실여부	⑧ 자격취득일	⑨ 자격상실일
	⑤ 성명	⑥ 생년월일			
1					
2					
3					
4					
5					
6					
7					
8					
9					
1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04조의7·제104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25조의3제4항·제125조의9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178㎜×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2호서식]<개정>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우체국

요금후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 재중

수신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취득 [ ]상실 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

① 사업장관리번호(하수급인관리번호)		
② 사무조합번호		③ 사무조합명
피보험자 (청구인)	④ 성명	생년월일
	⑤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⑥ 명칭	
	⑦ 소재지 (전화번호:)	
⑧ 자격취득 확인	[ ] 취득(취득일 년 월 일)	[ ] 취득사실 없음
⑨ 자격상실 확인	[ ] 상실(상실일 년 월 일)	[ ] 상실사실 없음
	[ ] 상실사유:	
⑩ 피보험자 관리명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사업장명	
⑪ 확인사유	[ ] 자격취득·상실신고 누락 [ ] 피보험기간 정정 [ ] 신고사항 변경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04조의7·제104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25조의3제4항·제125조의9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 통지합니다.

※ 구직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48조 및 제77조의3).

-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합니다.
- 예술인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고,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유지하는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합니다.
-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유지하는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공지사항
위 확인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178㎜×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3호서식]<개정>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우체국
요금후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 재중

수신자 :

년 월분 일용근로자 · 단기예술인 · 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사업주용)

① 사업장관리번호(하수급인관리번호)				
②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③ 보험사무대행기관명	
④ 사업장명칭				
일련번호	피보험자		⑦ 근로 · 노무제공 일수	⑧ 임금(보수)총액
	⑤ 성명	⑥ 생년월일		
1				
2				
3				
4				
5				
6				
7				
8				
9				
1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제104조의7 · 제104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제125조의3제4항 · 제125조의9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178㎜×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4호서식]<개정>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 재중

우체국
요금후납

수신자 :

년 월분 일용근로자 · 단기예술인 · 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

피보험자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소속사업주	⑤ 근로·노무제공 사업장명	⑥ 근로 · 노무제공 일수	⑦ 임금(보수)총액
피보험자 관리명세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⑧ 확인사유	[ ] 자격취득 · 상실신고 누락 [ ] 피보험기간 정정 [ ] 신고사항 변경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제104조의7 · 제104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제125조의3제4항 · 제125조의9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 통지합니다.

※ 구직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48조 및 제77조의3).

-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합니다.
- 예술인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고,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유지하는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합니다.
-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유지하는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공지사항

위 확인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⑤성명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178㎜×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2호서식]<개정>

년 제 차(월분) 고용유지 □ 근로시간 조정 □ 교대제 개편 □ 휴업 등 지원금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0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소재지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 담당자:)			
고용유지조치 현황	① (월) 말일 현재 피보험자수	명	② (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명
	③ 총근로시간 (해당 월 소정근로시간 + 반복적 연장근로시간)	시간	④ (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총근로시간	시간
	⑤ (월) 단축된 근로시간	시간	⑥ 근로시간 단축률	%
신청내용	⑦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 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금품 총액	원	⑧ 지원율	2/3, 1/2
	⑨ 지원금 신청액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 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금품 총액×지원율)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출퇴근카드, 출퇴근기록부 등 출퇴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년　　월 고용유지조치 및 지원금 신청 명세

연번	성명 생년월일	고용유지조치로 단축된 근로시간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 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금품	지원금 신청액	비고
<예시>	홍길동 80. 02. 16	100시간	400,000원	266,666원	
2					
3					
4					
계					

공지사항

1.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란은 고용유지조치를 한 (　월)의 말일 현재 전체 피보험자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해고·권고사직이 예정된 사람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90일 미만(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2. ②란은 ①의 전체 피보험자 중 고용유지조치를 한 피보험자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로 총근로시간이 감소된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3. ③란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총근로시간[해당 월의 전체 피보험자별 소정근로시간의 합계+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전체 피보험자가 근로한 시간의 합계를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적습니다.
4. ④란은 (　월) 동안 "①란의 전체 피보험자수가 근무한 총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습니다.
5. ⑤란은 ③에서 ④를 뺀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6. ⑥란은 ⑤/③×100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
7. ⑦란은 ⑤의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 총액을 적습니다.
8. ⑧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2/3, 그 외의 기업은 1/2에 표시합니다.
9. ⑨란은 ⑦에 ⑧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　청 →	접　수 (고용센터) ▼ 확인·검토 (고용센터) ▼ 결　재 (청장·지청장) ▼ 전산입력 (고용센터)
← 지　급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4호서식]<개정>

년 제 차(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대규모기업	[ ] 해당 [ ] 비해당
	소재지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신청 내용	① (월) 말일 현재 피보험자수	명		
	② (월) 휴직 근로자수	명	③ 휴직자에게 지급한 수당총액	원
	④ 지원율	2/3, 1/2	⑤ 지원금 신청액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 3.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휴직한 피보험자의 수당지급명세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원금 신청 대상 월의 휴직기간	휴직수당 지급액 ※ 무급휴직일 경우 '무급'이라고 적습니다.
				원
				원
				원
				원
				원
계				원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란은 고용유지조치를 한 (월)의 말일 현재 전체 피보험자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해고·권고사직이 예정된 사람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90일 미만(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2. ②란은 ①의 전체 피보험자 중 고용유조치(휴직)를 한 피보험자수를 적습니다.
3. ③란은 ②의 고용유지조치(휴직)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수당 총액을 적습니다.
4. ④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2/3, 그 밖의 기업은 1/2에 표시합니다.
5. ⑤란은 ③에 ④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 청 →	접 수 (고용센터) ↓ 확인·검토 (고용센터) ↓ 결 재 (청장·지청장) ↓
← 지 급	전산입력 (고용센터)

[별지 제36호서식]<개정>

년 제 차(월분) 고용유지조치 ☐ 근로시간 조정 ☐ 교대제 개편 ☐ 휴업 등 ☐ 계획 ☐ 계획변경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피보험자수 명	대규모기업	[ ] 해당 [ ] 비해당
	소 재 지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 담당자:)		

파견・수급 사업장 여부 ☐	사용(도급) 사업장 관리번호	사용(도급) 사업장 근무 피보험자 수 명

구 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포함된 달	직전 1개월	직전 2개월	직전 3개월
① 소정근로시간		* 작성생략		
② 연장근로시간 (반복적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만 해당)				
③ 총근로시간(①+②)		* 작성생략		

고용유지 조치 내용	④ 총 고용유지조치기간 (소정근로일수)	. . ~ . . (일)	⑤ (월) 전체 피보험자수	명
	⑥ (월)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수	명	⑦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총근로시간	시간
	⑧ (월) 단축한 근로시간	시간	⑨ 근로시간 단축률	%
	⑩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단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보전 지급기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및 고용유지조치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5.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년 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고용유지조치 예정(변경)일자																	계
1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일) (기존 근로시간) (단축시간)
		⑪기존 시간																	
		단축 시간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⑪기존 시간																	
		단축 시간																	
2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일) (기존 근로시간) (단축시간)
		⑪기존 시간																	
		단축 시간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⑪기존 시간																	
		단축 시간																	
계																		명	

공지사항

1.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란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한 달의 ⑤란에 기재된 전체 피보험자수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정한 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습니다.
2. ②란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연장근로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경우 또는 특정 요일, 특정 주(週)에 일정 시간동안의 연장근로가 반복된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의 초과 근로시간의 합계를 3으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3. ③란은 ①과 ②를 합한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④란은 계획하고 있는 총 고용유지조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기간 및 소정근로일수를 적습니다(예: '20. 3. 1. ~ '20. 3. 31, 22일)
5. ⑤란은 (월)의 전체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예정된 피보험자,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인 자는 제외합니다.
6. ⑥란은 (월)의 고용유지조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대상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7. ⑦란은 고용유지조치 기간(1개월) 동안 피보험자별 근무할 총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습니다.
8. ⑧란은 ③에서 ⑦을 뺀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9. ⑨란은 ⑧/③×100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
10. ⑩란은 ⑧의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 등 금품의 지급기준을 적습니다.
11. ⑪란에는 각 일자별 소정근로시간에 반복적 연장근로시간을 더한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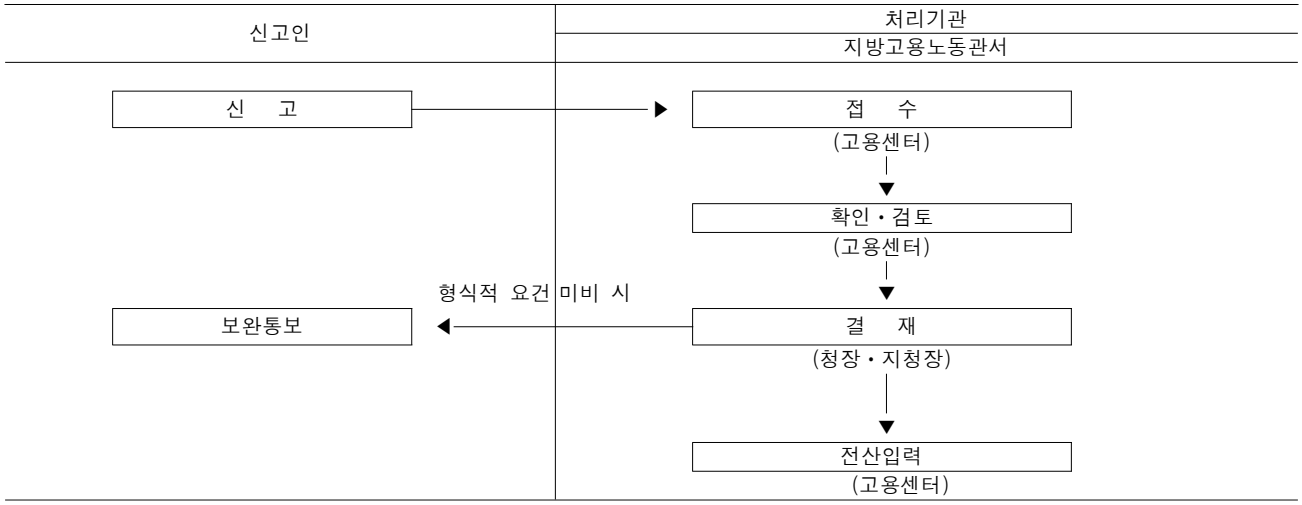

[별지 제38호서식]<개정>

년 제 차(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 계 획 □ 계획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피보험자수	대규모기업	[ ] 해당 [ ] 비해당
	소재지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파견·수급 사업장 여부	□ 사용(도급) 사업장 관리번호	사용(도급) 사업장 근무 피보험자 수 명	

고용 유지 조치 (휴직) 내용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의 휴직수당지급기준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자수	명

기타	고용유지조치(휴직) 사유	(별지 기재 가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매출액장부, 생산·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지사항

1.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유지조치계획은 1개월 단위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자 명단

※ 별지에 작성할 수 있으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는 피보험자만 해당합니다.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직예정(변경)기간	비고
계			명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 고 →	접 수 (고용센터) ↓ 확인·검토 (고용센터) ↓ 결 재 (청장·지청장) ↓ 전산입력 (고용센터)
← 보완통보	

[별지 제75호서식]<개정>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 앞쪽, 뒤쪽 모두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5일)

신청인 (이직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자우편(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최종 이직 사업장	④사업장명	
	⑤소재지	
	⑥자격취득일(입사일) 년 월 일	⑦이직일(마지막 일한 날) 년 월 일
	⑧구체적 이직 사유	

⑨현재 취직 중이거나 사업(자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 취직: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단시간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 등 * 사업(자영업):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비영리단체 대표자 · 부동산임대업자 · 채권추심원 · 다단계판매자 등	[ ] 취직 (취직내용:) [ ] 사업 (사업내용:) [ ] 아니오
⑩앞으로 새로운 직장에 취직 또는 사업(자영업)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 임신 · 출산 · 육아 · 질병 · 부상 · 가족 간병 등으로 본인이 당분간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 ] 예 [ ] 아니오 (취업이 곤란한 사유 :)
⑪산재휴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입니까?	[ ] 예 [ ] 아니오
⑫장애인의 경우 소정급여일수 산정 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입니까?	[ ] 예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확인) [ ] 아니오
⑬현재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셨습니까?	[ ] 예 [ ] 아니오
⑭(해고당한 경우) 원직으로 복직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셨습니까?	[ ] 예 [ ] 아니오
⑮(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오늘) 이전 1개월 동안(. . . ~ . . .)의 주휴수당을 받은 날을 포함한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입니까?	[ ] 예 (10일 미만) [ ] 아니오 (10일 이상)
⑯(일용근로자 중 건설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오늘)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습니까?	[ ] 예 [ ] 아니오
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근로 참여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였던 기간은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참여하셨나요?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급여특례, 차상위계층은 실업급여가 적용됨	[ ] 예 [ ] 아니오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뒤쪽에 추가 작성란 및 동의서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구직급여 수급 개시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사람, 예술인, 노무제공자 제외)

①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여부	[ ] 신청함 [ ] 신청하지 않음
②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 고지서 수령 방법	[ ] 우편 [ ] 전자우편 (이메일:)
③ 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이체 희망 여부 * 구직급여 수급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관련 재산·소득 확인 동의서
(고소득자 또는 고액재산가 지원 제외)

본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해 담당 직원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처 리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 (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 아래 내용은 서식 작성 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부분으로 접수・보관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1.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누적 일수가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 단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3. 해당 월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신청인이 보험료의 1/4을 부담하면 나머지 보험료인 3/4이 지원됩니다.

처리절차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결정	→	전산입력	→	불인정 통지서 수령 (불인정 시) 수급자격증 수령 (인정 시)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		신청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전산입력	→	산입여부 결정・통지	→	통지서 수령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별지 제75호의2서식]<개정>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 앞쪽과 뒤쪽 모두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4일(5일)

신청인 (폐업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자우편(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최종 폐업 사업장	④사업장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소재지	
	⑦보험가입일 년 월 일	⑧폐업일 년 월 일
	⑨구체적 폐업 사유	

⑩현재 취직 중이거나 사업(자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 취직: 상용직·임시직·일용직·단시간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등 * 사업(자영업):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비영리단체 대표자·부동산 임대업자·채권추심원·다단계판매자 등	[ ] 취직 (취직내용:) [ ] 사업 (사업내용:) [ ] 아니오
⑪앞으로 새로운 직장에 취직 또는 사업(자영업)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가족 간병 등으로 본인이 당분간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 ] 예 [ ] 아니오 (취업이 곤란한 사유 :)
⑫체납 중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가 있습니까? * 폐업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체납 중인 경우 보험료 및 연체금을 전부 납부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피보험기간이 ①1년 이상~2년 미만: 1회 이상, ②2년 이상~3년 미만: 2회 이상, ③3년 이상: 3회 이상	[ ] 있음(체납 중인 횟수: 회) [ ] 없음
⑬현재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셨습니까?	[ ] 예 [ ] 아니오
⑭근로자 피보험기간 합산을 희망하십니까? * 종전에 근로자이었던 사람이 구직급여를 받지 않고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근로자·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폐업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수수료 없음

※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

처 리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구직급여 수급 개시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사람 제외)	
①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여부	[ ] 신청함 [ ] 신청하지 않음
②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 고지서 수령 방법	[ ] 우편 [ ] 전자우편(이메일:)
③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이체 희망 여부 * 구직급여 수급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관련 재산·소득 확인 동의서 (고소득자 또는 고액재산가 지원 제외)

본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해 담당 직원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1.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누적 일수가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 단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3. 해당 월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신청인이 보험료의 1/4을 부담하면 나머지 보험료인 3/4이 지원됩니다.

처리절차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결정	→	전산입력	→	불인정 통지서 수령 (불인정 시) 수급자격증 수령 (인정 시)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		신청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전산입력	→	산입 여부 결정·통지	→	통지서 수령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별지 제82호서식]<개정>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1쪽, 2쪽 모두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수급자격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④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⑤실업인정대상기간

⑥지급계좌	신규신청[ ] 변 경[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지급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받아 기재		
⑦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사실 등 확인	근로사실 및 소득발생	[ ] 없음 [ ] 있음	고용보험 적용 [ ] 근로일수 [ ]일 소득금액 [ ]원 소득예정금액[ ]원	고용보험 비적용 [ ] 근로일수 [ ]일 소득금액 [ ]원 소득예정금액[ ]원
	사업자등록 (자영업개시)	[ ] 없음 [ ] 있음 (등록일(시작일): 사업내용:)		
	산재휴업급여	[ ] 없음 [ ] 있음 (재해일:)		

⑧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	구직활동	일자	업체명	전화번호	직종	구직방법	구직활동 결과
	자영업 준비활동						
	취업(예정) 내역	[ ] 취직 [취직(예정)일: 회사명: 전화번호:] [ ] 자영업 [시작(예정)일: 사업내용:]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내용	[ ] 고용센터 집체교육 [ ] 직업지도 참여(취업특강 등) [ ] 집단상담 프로그램 [ ] 직업훈련 수강 [ ] 기타 [ ]	[ ] 취업확정자 [ ] 사회봉사활동 참여자 [ ] 부당해고 구제신청자 [ ] 재취업활동 없는 자			

⑨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하여야 할 활동	[ ] 구직활동( ) [ ] 고용센터 집체교육 [ ] 직업지도 참여(취업특강 등) [ ] 집단상담 프로그램( )	[ ] 자영업 준비활동 [ ] 직업훈련 수강 [ ] 사회봉사활동 참여 [ ] 기타( )
⑩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 *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이메일:)	

☞ **뒤쪽에 작성란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1쪽, 2쪽 모두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2쪽)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제3항·제69조의9·제77조의5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66조·제93조의2·제104조의8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제115조의5·제12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실업인정을 신청하며,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수급자격증 1부 2. (상해)진단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면접확인서, 구직활동 내역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른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의 각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구직급여 수급 개시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사람, 예술인, 노무제공자 제외)

①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여부	[ ] 신청함 [ ] 신청하지 않음
②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 고지서 수령 방법	[ ] 우편 [ ] 전자우편(이메일:)
③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이체 희망 여부 * 구직급여 수급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작성방법> ①, ②, ③란은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또는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기재하며, 신청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음으로 표시합니다. 실업인정 신청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관련 재산·소득 확인 동의서
(고소득자 또는 고액재산가 지원 제외)

본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해 담당 직원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실업인정 유형	[ ] 실업인정일 변경 [ ] 증명서에 따른 실업인정 [ ] 잠정실업인정 [ ]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실업인정 [ ] 상병급여 청구와 병행 [ ] 유족의 청구에 따른 실업인정							
지급 사항	처리	실업인정일수		구직급여 산출명세		지급액		
		미지급사유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지청장	결재연월일
	. . .							. . .

※ 아래 내용은 서식 작성 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부분으로 접수・보관되지 않습니다.

공지사항

1.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실업인정 신청서는 출석일마다 작성합니다.
2. ①・②・③란은 반드시 적습니다.
3. ⑤란은 이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출석일(실업인정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4. ⑥란은 최초 실업인정 시의 지급계좌를 적으시고, 그 이후부터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적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⑦란 중 근로사실 및 소득발생란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한 적(공공근로, 일용, 아르바이트,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취업형태 구분 없이 모두 작성)이 있으면, 있음에 체크하고 오른쪽 칸의 내용을 적습니다. 일한 곳이 고용보험 적용 일자리이면 적용에, 비적용 일자리이면 비적용에 체크하고 그 아래에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한 날을 적습니다. 일을 하고 실제로 소득이 생겼으면 소득금액에 그 금액을 작성하고, 일은 했지만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소득예정금액에 그 금액을 작성합니다.
6. ⑦란 중 사업자등록란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명의 대여사항을 적습니다.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학습지교사 등을 시작한 사실이 있을 경우도 적으십시오.)
7. ⑦란 중 산재휴업급여란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현재 산업재해로 인한 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면 적으십시오.
8. ⑧란 중 자영업 활동계획란은 자영업계획이 있으신 분만 적으십시오.
9. ⑧란 중 취업(예정)내역란은 취직 또는 자영업이 확정된 경우에 적습니다.

유의사항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1.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누적 일수가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 단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3. 해당 월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신청인이 보험료의 1/4을 부담하면 나머지 보험료인 3/4이 지원됩니다.

처리절차

<실업인정 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검토	→	급여 지급 여부 결정・통지	→	급여 수급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		신청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전산입력	→	산입여부 결정・통지	→	통지서 수령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별지 제105호의3 서식]<신설>

계약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 지급 신청서(회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1. 신청인 정보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및 연락처		(연락처:)
④출산일(출산예정일)		⑤영아의 주민등록번호
		⑥다태아(多胎兒) 여부 [ ] 예 [ ] 아니오
⑦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산전후휴가 기간	⑧ 근로계약기간 내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⑨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2. 신청내용

⑩ 이번 회차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⑪ 급여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확인 사항

⑫ 위 ⑩의 신청기간 중 취직(재입사 포함), 창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취직 또는 [ ]창업: [ ]예 [ ]아니오, 취직일 또는 창업일:

⑬ 신청기간 연장 사유(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잔여 출산전후휴가 상당 기간이 종료된 후 12개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4. 서명 및 날인

「고용보험법」 제7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은 근로계약 만료일에 해당 출산전후휴가 잔여일수를 더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의 신청은 회차별(1, 2, 3, 4회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⑤란에는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2명 이상 출산한 경우에도 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태아, 유산·사산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⑤란에 111111-1111111로 적습니다.
3. ⑥란은 다태아 또는 2명 이상 출산한 경우 '[ ] 예' 부분에 표시합니다(출산전후휴가 상당 기간 및 급여지급기간이 늘어납니다).
4. ⑦란에는 출산전후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계약의 총 기간(시작일과 만료일)을 적습니다.
5. ⑧란에는 근로계약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총 일수를 기재합니다.
6. ⑨란에는 계약만료로 사용하지 못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총일수를 기재합니다. 총 일수는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총 120일)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기 사용한 ⑧의 출산전후휴가 일수를 제외한 일수입니다.
7. ⑩란에는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의 출산전후휴가 상당 기간에 대하여 이번 급여 신청에 해당하는 기간을 적습니다.
8. ⑪란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9. ⑫란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 지급 신청기간' 중 취직 또는 창업하였을 경우 적습니다
10. ⑫란을 사실대로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수급한 급여액을 반환해야 하고,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⑬란 작성 시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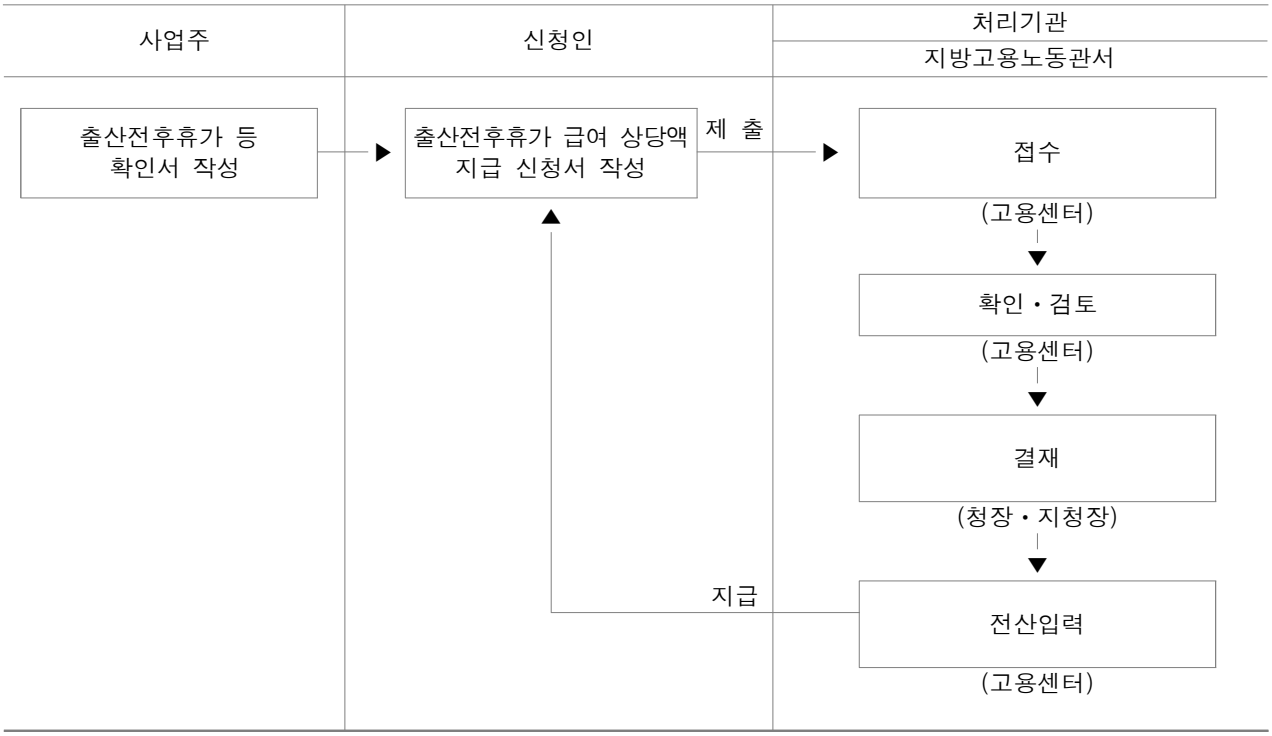

[별지 제105호의4서식]<개정>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회차)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1. 신청인 정보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및 연락처 (연락처:)	
④임신기간(유산·사산인 경우에만 표시) 1. 11주 이내 [ ] 2. 12주~15주 [ ] 3. 16주~21주 [ ] 4. 22주~27주 [ ] 5. 28주 이상 [ ]	
⑤출산일(출산예정일, 유산·사산일) 년 월 일	⑥영아의 주민등록번호 / ⑦다태아(多胎兒) 여부 [ ]예 [ ]아니오

⑧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출산일을 포함하여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 연속하는 총 90일을 설정합니다)	전체 기간 (총 90일, 다태아인 경우 120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첫 번째 30일 중 지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일)
	두 번째 30일 중 지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일)
	세 번째 30일 중 지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일)
	네 번째 30일 중 지급기간 (다태아인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 ~ 년 월 일(일)
⑨월평균보수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년 간 보험료를 납입한 보수 기준]		원

2. 신청내용

⑩ 이번 회차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⑪ 급여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확인사항

⑫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습니까?

[ ]예 (기간: 금액: 원) [ ]아니오

⑬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 지급기간에 예술인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습니까?

[ ]예 (금액: 원) [ ]아니오

⑭ 신청기간 연장 사유(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신청자만 적습니다)

4. 서명 및 날인

「고용보험법」 제77조의4·제77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5·제125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출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등으로 영아의 출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을 적은 것을 말하며,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지급기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관한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보수액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는 출산일 또는 유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또는 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1.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은 회차별(1, 2, 3, 4회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①, ②, ③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3. ④란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상의 임신기간을 해당 부분에 표시합니다(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⑥란에는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2명 이상 출산한 경우에도 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태아, 유산·사산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⑥란에 111111-1111111로 적습니다.
5. ⑦란은 다태아 또는 2명 이상 출산한 경우 '[ ] 예' 부분에 표시합니다
6. ⑧란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적습니다. '전체 기간'에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연속하는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기간을 적고, '첫번째 30일 중 지급기간'에는 첫 번째 30일의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을 하지 않는 등 지급요건을 갖춘 지급기간을 적습니다.
7. ⑨란의 월평균보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보수액 기준으로 아래의 산식을 따릅니다.

   ※ 월평균보수: 출산일(유산·사산일) 이전 1년 간의 월평균보수의 합/종사개월수

8. ⑩란에는 총 지급기간 중 이번 급여 신청에 해당하는 기간을 적습니다.
9. ⑪란에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10. ⑫란은 ⑧란에 적시한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에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 ] 예' 부분에 표기하고 기간 및 금액을 적습니다(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아니오' 부분에 표기)

    ※ 출산(유산·사산)일 전후 90일 이내에 노무를 제공한 기간은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합니다.

11. ⑬란은 지급기간 중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 ] 예' 부분에 표기하고 금액을 적습니다.(없다면 '[ ] 아니오' 부분에 표기)
12. ⑭란 작성시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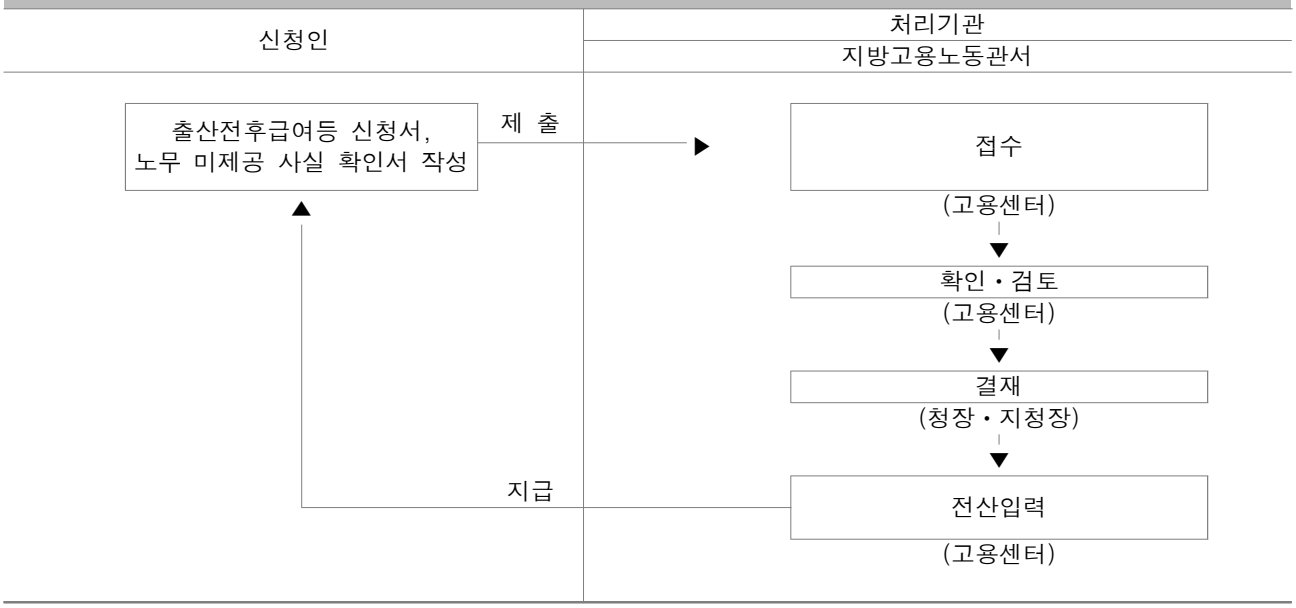

[별지 제106호서식]<개정>

[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 ]지급
[ ] 출산전후급여등의 [ ]부지급 결정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가부여기간 (급여지급기간)		신청일
결정내용	[ ] 지급(금액:) - 급여산출명세: [ ] 부지급(부지급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 및 제125조의6제1항 및 제125조의1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지급안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급여등)은 귀하가 신청 시 적으신 계좌번호로 즉시 입금됩니다.

심사청구안내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급여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한 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07호의3서식]<개정>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① 아래 확인자는 '출산전후급여등'과 관련하여 급여 지급기간(20 . . . ~ 20 . . .)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1항제2호 또는 제104조의11제1항제2호에 따라 위 급여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아래 확인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지급 받으려 하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급여 환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08호서식]<개정>

[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사업주	④회사명			
	⑤소재지			
⑥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 사유				
부정수급	⑦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⑧추가 징수금액			
	⑨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			
⑩납부할 금액(⑦+⑧+⑨)				
⑪ 납부방법		[ ] 일시납부	[ ] 분할납부(회)	

귀하에 대한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 ]출산전후급여등은 「고용보험법」제77조 및 제77조의4 및 제77조의9에 따라 이를 지급제한(반환명령, 추가징수)하기로 결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9 및 제104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6 및 제125조의12)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위 납부할 금액을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9호서식]<개정>

[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 ] 출산전후급여등의 과오급 반환결정 통지서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사업주	④회사명			
	⑤소재지			
⑥과오급 결정사유				
⑦과오급으로 인한 반환금액				
⑧납부방법		[ ] 일시납부	[ ] 분할납부(회)	

위 지급된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 ]출산전후급여등 수급액은「고용보험법」 [ ] 제62조 및 제77조 [ ] 제62조 및 제77조의4 및 제77조의9 에 따라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제2항 및 제125조의6제4항 및 제125조의12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0호서식]<개정>

㊞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문서번호:
수　　신:

[ ] 송달서
[ ] 통지서

①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사건		
② 청 구 인		③ 피청구인	
④ 송달서류			
⑤ 통지사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제125조의13 및 제1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송달(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고용보험심사관 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2호서식]<개정>

기피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즉시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신청취지		
신청원인		
소명방법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3항· 제77조의10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 제104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 제125조의13
「고용보험법」 제8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
「고용보험법」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2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소명 자료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3호서식]<개정>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사건		
청구인		피청구인	
승계인			
승계원인			
증명방법	가족관계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통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3항· 제77조의10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 제104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 · 제125조의13

「고용보험법」 제8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

「고용보험법」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2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계 신고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지위승계에 관한 증명자료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	결정	→	결정 통지
신고인		심사관/심사위원회		심사관/위원장		심사관/심사위원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4호서식]<개정>

심사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30일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대리인 또는 선정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피청구인	원처분청		
원처분내용	원처분일	년 월 일	원처분을 안 날 / 년 월 일
	처분내용		
원처분청의 고지유무 및 그 내용			
청구취지 및 이유	(별지에서 적은 것과 같음)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3항·제77조의10제3항·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제104조의15·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제125조의13·제1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관 귀하

첨부서류	청구서 부본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5호서식]<개정>

보정요구서

①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사건		
② 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보정할 사항			
⑤ 보정을 요하는 이유			
⑥ 보정할 기간			
⑦ 그밖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3항· 제77조의10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 제104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 제125조의13

「고용보험법」 제9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고용보험법」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2조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고 용 보 험 심 사 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 직인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6호서식]<개정>

집행정지 통지서

①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사건		
② 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집행정지대상처분 및 집행정지의 내용			
⑤ 집행정지일			
⑥ 집행정지이유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3항·제77조의10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제104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제127조의13

「고용보험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

「고용보험법」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2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년 월 일

고 용 보 험 심 사 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 직인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7호서식]<개정>

증거조사 신청서

사건번호·사건명 및 청구인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증거조사신청사항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3항 · 제77조의10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 제104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 · 제125조의13

「고용보험법」 제9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3조

「고용보험법」 제10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2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용 보 험 심 사 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8호서식]<개정>

출석 통지서

①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사건		
② 청구인		③ 피청구인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3항· 제77조의10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 제104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 · 제125조의13

「고용보험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

「고용보험법」 제10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2조

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일시: . . . 오전:

오후:

2. 장소:

3. 출석할 사람:

년 월 일

고 용 보 험 심 사 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 직인

귀하

출석안내
1.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번호(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출석하실 때는 이 통지서·주민등록증·인장, 그 밖의 참고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9호서식]<개정>

증거조사 조서

①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사건		
② 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일시		⑤ 장소	
⑥ 참여한 심사관 및 위원			
⑦ 출석한 당사자 등			
⑧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⑨ 조사결과	(별지에서 적은 것과 같음)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3항· 제77조의10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 제104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 제125조의13

「고용보험법」 제9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

「고용보험법」 제10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2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증거조사를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21호서식]<개정>

(앞쪽)

제　　호

심사관(심사위원회 위원) 증표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고 용 노 동 부

60㎜×90㎜[백상지 150g/㎡]

(색상: 연노랑색)

(뒤쪽)

심사관(심사위원회 위원) 증표

소속/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고용보험법」제77조의5제3항, 제77조의10제3항, 제94조제2항 및 제101조제7항에 따른 권한을 가진 심사관(심사위원회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인

○ 심사관(심사위원회 위원)의 권한(「고용보험법」제77조의5제3항, 제77조의10제3항, 제94조제2항 및 제101조제7항)

1.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하는 것
2.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는 것
4.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종업원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것

[별지 제123호서식]<개정>

심리 비공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건번호		사건명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취지			
신청이유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3항·제77조의10제3항·제101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제2호나목·제104조의15제2호나목·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제125조의13·제14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결정 통지
신청인		심사위원회		위원장		심사위원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25호서식]<개정>

심리조서 열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즉시

사건번호 및 사건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이유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3항·제77조의10제3항·제10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제2호나목·제104조의15제2호나목· 제1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제125조의13·제1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26호서식]<개정>

재심사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50일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피청구인	원처분청		

원처분 내용	원처분일	20 . . .	원처분을 안 날	20 . . .	
	처분내용			원처분의 고지유무	
결정한 심사관명		결정서를 받은 날	20 . . .	결정이 있음을 안 날	20 . . .

심사관의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청구취지 및 이유	(별지에서 적은 것과 같음)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3항·제77조의10제3항·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제2호가목·제104조의15제2호가목 · 제1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제125조의13·제15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청구서 부본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법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영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려는 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④ (생 략)	제2조(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람이 ----------. ----------.
제5조(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신고 등) ①·② (생 략) ③ 삭 제 ④ 영 제8조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로자·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를	제5조(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④ ----------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제2조, 제2조의2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17호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전산입력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해당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별지 제7호서식,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의2서식----------.
제11조(피보험자의 이름 등 변경 신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경·정정신고 또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제11조(피보험자의 이름 등 변경 신고) ---------- 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19호의2서식----------.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①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① ----------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 ---------- 사람으로 동시---------- 사람으로 고용된 ----------.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1. ---------- 월평균보수(단, 영 제21조의 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직전 연도의 월평균보수)---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② ---------- 근로자,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 ---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가목과 나목의 피보험자격 가운데 ---.
③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인 피보험자 및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예술인이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둘 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유지 또는 취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을 유지 또는 취득할 수 있다.
제31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38호서식까지의 고용유지조치 계획	제31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① ----------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

·계획변경 신고서 중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20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각각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정·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50퍼센트 이상으로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제32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① ----------. ---------- 100분의 50 미만으로 ----------

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4조(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요건) (생 략)	제34조(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요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재난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준달의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달리할 수 있다.
제68조(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 ① (생 략)	제68조(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훈련수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수준은 훈련직종, 훈련수강횟수, 훈련생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1. ---------- 없는

자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시간 이상인 과정을 수강하는 자 3. 훈련기간 동안 매 단위 월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자 ③·④ (생 략)	사람 2. ---------- -- 사람 3. ---------- -- 사람 ③·④ (현행과 같음)
제85조(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① 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기간이 28일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실업은 그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월 1회 지정한 날에 그 이전 1개월간의 각각의 날(이미 실업인정의 대상이된 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인정한다. ② ~ ⑤ (생 략)	제85조(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① ---------- ---------- 사람은 ---------- ---- 대상이 된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임신·출산·육아·노약자의 간호, 그 밖의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자 중 그 이직 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2. ~ 5. (생 략)	----------. 1. ---------- 사람 중 ---------- 2. ~ 5. (현행과 같음)
제90조(증명서의 기재사항) 법 제44조제3항과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기재사항과 그 발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의사나 그 밖에 진료를 담당한 자의 증명서 가.·나. (생 략) 2. 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구인자의 증명서	제90조(증명서의 기재사항) ----------. 1. ---------- 사람의 경우에는 ---------- 사람의 증명서 가.·나. (현행과 같음) 2. ---------- 사람의 경우에는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3. 법 제44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증명서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증명서	3. ---------- 사람의 경우에는 ---------- 사람의 증명서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신 설>	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5. ~ 7. (생 략)	7. ~ 9.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104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04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 사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의 부정행위로 한 정한다)의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 다만,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영	2. ---------- 사람----------. ----------

제80조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근로제공일수와 그 기간 중에 실제로 인정받은 근로일수의 차이가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사람이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② (생 략)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추가징수액----------.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부정수급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3. ---------- 법 제62조에 따른 반환금 및 추가징

확약한 경우: 100분의 60 ④ (생 략) <신 설>	수금---------- ④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3(근로계약기간이 끝난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① 법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5호의3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23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한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의 지급 신청은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날부터 근로계약 종료일에 출산전후휴가 잔여일수를 더한 기간까지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의 지급 제한 범위에 관하여는 제123조의2, 제124조, 제1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으로본다.
제122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21조 또는 제121조의2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대한 지급 신청을 받으면 법 제75조 또는 법 제75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77조에 따른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제122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등) ① ---------- 제121조, 제121조의2 또는 121조의3에 따라----------

후 별지 제106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3조(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 ① 사업주는 법 제77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또는 별지 제107호의2서식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이하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제123조(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 ① ------ 법 제76조의2, 제77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5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① 예술인이 영 제104조의5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월평균소득(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을 합산 신	제125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① ----------

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복수사업장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취득 소득합산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생 략)	---------- 별지 제6호의4서식---------- 피보험자격 ----------. ② (현행과 같음)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① 영 제104조의6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2. 피보험자격의 상실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② 영 제104조의6제2항에 따른 단기예술인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4조의6제3항에 따른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① ----------. 1. ---------- 별지 제5호의2서식---------- 2. ---------- 별지 제6호의2서식---------- ② ---------- 별지 제7호의2서식-----. ③ ----------

상실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로자·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에 따른다.	---------- 고용보험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5조의5(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예술인인 피보험자는 별지 제105호의3서식의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와 별지 제107호의3서식의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출산의 경우에만, 제2호의 서류는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125조의5(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 ① ---------- 별지 제105호의4서식의 예술인·노무제공자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5조의6(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 ①·② (생 략)	제125조의6(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62조제1항 및 법 제77

	조의4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제10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액”은 “출산전후급여등의 급여액”으로 본다.
<신 설>	④ 법 제77조의5제3항 및 영 제104조의9제5항에 따른 지급 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 과오급 반환의 통지에 관해서는 제1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신 설>	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신 설>	제125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①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가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무제공자가 영 제104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의 월 보수액(영 제104조의11제2항제 1호에 따른 월 보수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근로복지공단은 영 제104조의11제4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한 노무제공자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월 보수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① 영 제104조의12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2. 피보험자격의 상실의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② 영 제104조의12제2항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4조의12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에 따른다. ④ 법 제77조의10제1항 및 영 제104조의12제4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영 제10조제1항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영 제3조의2제

	2항・제4항 및 이 규칙 제2조제1항・제2항・제4항의 규정"은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일용근로자"는 각각 "단기노무제공자"로, 제10조 중 "제2조, 제2조의2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으로, "일용근로자"는 "단기노무제공자"로 본다.
<신 설>	제125조의10(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법 제77조의10제2항 및 영 제104조의13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결정의 통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 수급자격증, 실업인정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81조, 제82조, 제83조부터 제91조까지, 제92조의2, 제93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07조의2를 준용한다.
<신 설>	제125조의11(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 ① 법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는 별지 제105호의4서식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와 별지 제107호의3서식의 노무미제공 사실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출산의 경우에만, 제2호의 서류는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2.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3. 영 제104조의14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영 제104조의14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신청은 영 제104조의14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기간에 신청할 수 있고, 출산일 또는 유산·사산일부터 9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지급기간에 대하여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25조의12(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25조의11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영 제104조의14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06호서식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②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방법, 급여원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1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신 설>	제125조의13(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법 제77조의10제3항 및 영 제104조의15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에 대한 심사,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35조부터 제153조까지 및 제155조를 준용한다.
제148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① 영 제136조에 따른 전문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148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① ----------

와 같다. 1. (생 략)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행정학·경영학·경제학·사회학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노동행정업무에 통산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생 략)	------. 1. (현행과 같음) 2. ---------- 사람 3. ---------- 사람으로서 ---------- 재직한 사람 4. ---------- 인정하는 사람 ② (현행과 같음)